

현행	개정안
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-④ (생략) 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.	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-④ (현행과 같음)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3. 검토의견

국·공유림의 보존, 확대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,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 제제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 자치단체의 요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○專門委員 沈玩澤 다음은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말씀

드리겠습니다.

(參 照)

1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취득: 1건 660㎡
- 공유재산 매각: 1건 1㎡

구분	소재지	지목	면적	공시지가
취득	구평동 159번지 일원	임야	660㎡	145,680천원
매각	괴정동 102-8	대	1㎡	973천원

3. 검토의견

- 구평동 159번지 일원의 660㎡는 구에서 매입하여 구평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
- 괴정동 102-8번지 1㎡는 정영식 소유의 건물이 '81. 4. 30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으며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이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코자 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